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후반기 의장단 선출시까지 전반기 의장단 임기 연장〉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45호)

2024. 8.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상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한규 · 모경종 · 강경숙 · 정일영 · 안호영 · 서미화
박민규 · 서영석 · 정준호 · 위성곤 · 전현희 · 이성윤
의원(12인)

2. 제 안 일 : 2024. 6. 10.

3. 회 부 일 : 2024. 6. 11.

※ 의안번호 : 24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입법부로서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특히 국회의 상임위원회는 각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소관 기관들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직무로 함.

그러나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과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2년으로 고정하여 후반기 원 구성 전까지 상임위원회와 국회의 공백을 초래함. 이에 따라 입법은 물론 인사청문회 · 대정부질문 등 정부의 주요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함.

이에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다시 상임위원으로 선임될 때까지로 해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9조, 제14조, 제18조 및 제40조, 제41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하는 한편, 전반기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도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려는 것임.

[표-1] 현행법과 개정안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의장·부의장 임기 (제9조)	- 의장단 임기: 2년 - 전반기 의장단 임기: 선출된 날 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단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 의장단 임기: 2년 - 전반기 의장단 임기: 선출된 날 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다만,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함) -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단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
상임위원 임기 (제40조)	- 상임위원 임기: 2년 -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선임된 날 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 - 보임·개선된 상임위원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상임위원 임기: 2년 - 전반기 상임위원 임기: 선임된 날 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함) - 보임·개선된 상임위원 임기: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상임위원장 임기 (제41조)	-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음	-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음(다만, 후반기 상임위원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함)
의장 직무대행 (제14조, 제18조)	- 사무총장이 의장 집무대행으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는 경우: ①전반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②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까지 후반기 의장단 미선출시, ③폐회 중 의장·부의장 모두 궐위시 - 의장단 선거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집무대행을 하는 경우: ①전반기 의장단 선거시, ②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 후 후반기 의장단 선거시, ③의장·부의장 모두 궐위 되어 보궐선거시	- 사무총장이 의장 집무대행으로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는 경우: ①전반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② <삭 제>, ③폐회 중 의장·부의장 모두 궐위시 - 의장단 선거시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 집무대행을 하는 경우: ①전반기 의장단 선거시, ② <삭 제>, ③의장·부의장 모두 궐위되어 보궐 선거시

현행법은 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를 선출일로부터 의원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규정하고¹⁾, 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후반기 의장단의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²⁾

그런데 교섭단체 간 합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법정기일(전반기 의장단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음³⁾. 이 경우 후반기 의장단이 선출될 때까지 후반기 상임위원 또한 선임될 수 없어⁴⁾ 상임위원회도 운영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표-2] 국회 원 구성 소요기간

구 분		국회의장 선출일	상임위원장 선출일	원 구성기간(일)
제14대	전반기	1992.06.29.	1992.10.02.	126
	후반기	1994.06.28.	1994.06.28.	30
제15대	전반기	1996.07.04.	1996.07.08.	40
	후반기	1998.08.03.	1998.08.17.	80
제16대	전반기	2000.06.05.	2000.06.16.	18
	후반기	2002.07.08.	2002.07.11.	43
제17대	전반기	2004.06.05.	2004.07.05.	37
	후반기	2006.06.19.	2006.06.20.	22
제18대	전반기	2008.07.10.	2008.08.26.	89
	후반기	2010.06.08.	2010.06.08.	10

- 1)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2) 제15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 3) 제18대~제20대 전·후반기 국회 모두 법정기한 내 원구성을 완료하지 못함
- 4)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이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입시회의 집회일부터 2일 이내에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고,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까지 요청이 없을 때에는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구 분		국회의장 선출일	상임위원장 선출일	원 구성기간(일)
제19대	전반기	2012.07.02.	2012.07.09.	41
	후반기	2014.05.29.	2014.06.24.	26
제20대	전반기	2016.06.09.	2016.06.13.	15
	후반기	2018.07.13.	2018.07.16.	48
제21대	전반기	2020.06.05.	2020.06.29.	31
	후반기	2022.07.04.	2022.07.22.	54
제22대	전반기	2024.06.05	2016.06.10.	12

주: 국회의장 선출기간과 원 구성기간은 전·후반기 임기 개시일인 5월30일로부터 도과된 날짜 기준이며, 상임위원장 선출일이 복수일 경우에는 첫 상임위원장 선출일을 기준으로 함
 자료: 국회사무처 「2020년 의정자료집」. 제21대 및 제22대 국회는 국회 회의록 참조

이에 개정안은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후임자가 선출·선임될 때까지로 함으로써, 국회가 의장단과 상임위원의 공백 없이 계속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제14대 국회의 「국회법」 개정(1994.6.28.) 전에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 등이 후임자 선출·선임 전일까지 재임하였으나⁵⁾, 원 구성 협상이 순조롭지 못하여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등에는 전·후반기의 임기가 균등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⁶⁾ 제14대 국회에서 현행과 같이 개정하였음.

5) 「국회법(법률 제4542호)」 제9조 (의장·부의장의 임기) ③국회의원 총선거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40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국회의원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6) 국회운영위원장 제안(1994.6.24.) 「국회법중개정법률안」 주요골자 3. 종래와 같은 원구성 지연에 따른 전·후반기 의장단,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 임기의 불균형 및 선거시기의 불일치 현상을 시정하기 위하여 전·후반기의 임기를 각각 의원임기의 2분의 1인 2년씩으로 법정화함.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를 공백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와 전·후반기 의장단 등의 임기가 불균등해질 수 있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014